

생산일 : 2000.2.17

이 자료는 2000년 2월 18일(금) 오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報道資料

題目 : 어음制度 改善方案

主要內容

- 정부는 2.17(목) 오후 3시, 정부파천청사에서 이현재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중소기업특별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음
- 회의에서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연쇄부도 초래 등 문제점이 크게 부각된 어음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되,
 - 기업들이 대금결제의 상당부분을 어음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음결제를 급속히 축소·폐지하는 제도개편은 유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 어음의 대체결제수단인 구매자금융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구매전용카드 사용을 확장하며, 구매자금융 또는 구매전용카드 이용기업에 대한 세제·세정상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입찰심사시 우대함으로써 어음결제비중이 자연스럽게 축소되도록 유도하고
 - 어음발행에 대한 금융기관의 정보관리를 강화하고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어음결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이를 위해 금년 1/4분기까지 관계기관별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령 개정등을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임

별첨 : 어음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 생산과 :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 (500-5354~6)

財政經濟部公報官

目 次

1. 어음거래 현황 -----	1
2. 어음제도의 문제점 -----	2
3. 어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기본인식 및 제도개선 방향 -----	4
4. 추진방안 -----	5
5. 향후 추진계획 -----	11

1. 어음거래 현황

- 어음은 오랜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되어 보편적인 기업간 신용·지급수단으로 활용
- 기업간 대금결제에서 어음결제의 비중은 '97년 60%에서 '98년에는 54%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일본은 '97년 40%)
- 어음거래 잔액은 계속 증가하여 '97년 말 97조원에 이르렀으나, 외환위기 이후 실물경제의 위축등으로 98년 말에는 80조원으로 감소

<어음수취규모 및 결제비중 추이>

(말잔기준, 조원)

	'90년	'95년	'96년	'97년	'98년
보유어음 (A)	15.9	32.2	31.9	49.8	43.7
어음할인 (B)	11.9	38.8	52.7	46.8	36.0
예금은행	7.7	21.6	24.4	24.3	17.6
기타기관	4.1	17.2	28.4	22.6	18.4
어음잔액 (C=A+B)	27.7	71.0	84.7	96.6	79.6
중소기업의 어음	51.4	57.5	55.7	59.5	53.6
판매대금 현금	39.7	30.3	29.4	28.2	32.0
결제비중 (%) 외상	8.9	12.2	14.9	12.3	14.4

* 자료 : KDI 연구보고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등을 기초로 추정
(중소기업 판매대금 결제비중 :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 이와 같이 어음거래가 널리 활용되어 온 것은
 - 그동안 우리 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현금결제능력이 부족하였고

- 대기업은 현금여유가 있는 경우에도 수요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음으로 결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할인을 통하여 만기전에 현금화할 수 있고, 은행을 통한 대금회수에 있어서도 편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

2. 어음제도의 문제점

- 어음은 기업간 신용수단으로서 기업의 유동성을 보완하면서 실물거래를 촉진하는 경제적 순기능이 있으나
 -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어음거래의 부작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보다 심각하게 대두
- ①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가중
- 중소기업의 경우 어음결제비중이 높고 교섭력(bargaining power)의 부족으로 결제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 * 중소기업의 평균 어음대금 회수기일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 '99.3/4분기 135일 (수취기일 43일 + 결제기일 92일)
 - 특히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어음할인에도 어려움이 있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게 됨

② 연쇄부도 유발 가능성

-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기업은 어음결제 schedule에 의존하여 자금을 관리할 뿐 아니라,
 - 배서·양도를 통하여 지급수단으로 재사용함으로써 1개 어음에 다수의 기업이 연관
 - * 어음장 이면의 배서란은 3회까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거래에서는 부전지 첨부를 통하여 10회 이상까지 배서하는 사례가 많음
- 이에 따라 어음거래기업중 한 업체의 자금난이 연쇄적인 지급불능사태와 부도를 초래

③ 어음남발에 따른 사회적 폐해

- 신용력이 약한 기업이 결제능력 이상으로 어음을 남발하거나 고의로 부도를 낼 경우 적절한 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 발생
- 어음은 수표와 달리 부도시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민사상의 책임만 부담

3. 어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기본인식 및 제도개선 방향

-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지 않고 신용사회 풍토가 성숙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음의 부정적 측면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 어음 자체는 편리한 지급수단으로 아직까지 기업들이 대금결제의 상당부분을 어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일거에 어음거래를 축소·폐지하려는 제도개편은 유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경제적 혼란만 초래할 우려
 - 어음거래의 인위적인 축소·폐지는 상거래의 위축과 왜곡을 초래
 - 어음폐지는 현금결제 확대가 아닌 외상거래 증가만 초래할 가능성이 큼
 - 기업간 교섭력(bargaining power)의 불균형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제도개편에 따른 추가비용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전가될 가능성
- 최근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는 여건을 활용하여
 - 대체수단을 통한 결제확대 등 어음거래가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감과 아울러
 - 어음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병행추진

4. 추진방안

- ◇ 어음결제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구매자금융제도를 도입·운용하고 기업구매카드등 대체결제수단의 활용을 촉진
- ◇ 어음남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어음발행 정보관리를 강화하고 하도급거래관행을 개선

가. 구매자금융 제도의 도입

- 지금까지는 구매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납품기업이 수취하여 할인·현금화하는 공급자금융방식을 이용하여 왔으나
 - 자금수요가 있는 구매기업에 직접 금융을 제공하는 구매자금융방식이 금융원리에 보다 부합
- 또한 어음결제를 줄이기 위하여는 어음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축소·폐지해 나가야 하나
 - 금융기관의 상업어음할인에 대해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음사용이 조장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 한은의 자금지원 대상을 금융기관의 상업어음할인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나감으로써 어음결제를 축소해 나갈 필요
- ⇒ 구매기업이 자금을 융자받아 납품대금을 현금결제도록 하는 새로운 금융·결제수단으로서 구매자금융제도를 도입

□ 구매자금융제도는 납품기업이 주도적으로 납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입·운용

○ 납품기업은 납품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 거래은행에 추심의뢰

* 환어음은 추심수단으로만 활용케 하여 유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연쇄부도등의 폐해 방지

○ 구매기업은 환어음을 인수함과 동시에 대금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지원받아 구매대금을 지급

* 구매기업의 거래은행이 환어음 결제를 즉시이행(at sight)토록 함으로써 대금지급 지연소지를 방지

□ 구매자금융제도가 활성화되도록 금융·세제 등 정책적 지원을 병행

○ 은행의 구매기업(30대계열 제외)에 대한 구매자금융 취급 실적을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 포함

○ 구매자금융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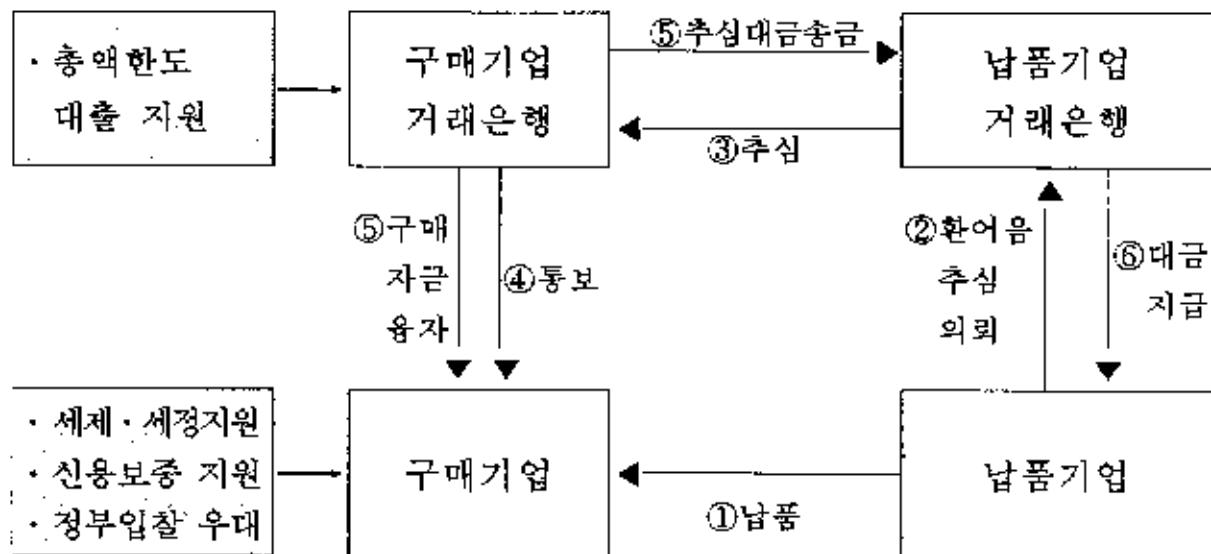
· 공제세액 : (구매대금 지급을 위한 환어음 결제액 + 구매 전용카드 결제액 - 어음발행액) × 0.5%

* 공제한도 : 산출세액의 10%

* 대기업은 어음업무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효과가 커 구매자금융 결제 유인이 있음 (월 5천장의 어음발행 및 3명의 전담인력 운영시 연간 2 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으며, 어음관련 금전사고 예방 등 계량화가 곤란한 비용절감 효과도 큼)

- 구매기업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구매자금융에 의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 구매자금융제도 이용도가 높은 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구매자금융제도를 통한 대금 결제실적을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반영
- 구매자금을 대출받는 구매기업(30대계열 제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이 우선하여 보증 지원
 - *중소기업이 아닌 구매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은 한시적으로 시행
- 구매자금융제도를 통한 대금결제실적이 높은 기업을 정부 입찰심사시 우대
 - *정부입찰 적격심사시 구매자금융 이용도가 높은 기업에게 가점 부여
- 전자상거래 확산추세에 부응하여 구매자금융 취급절차의 전산화를 적극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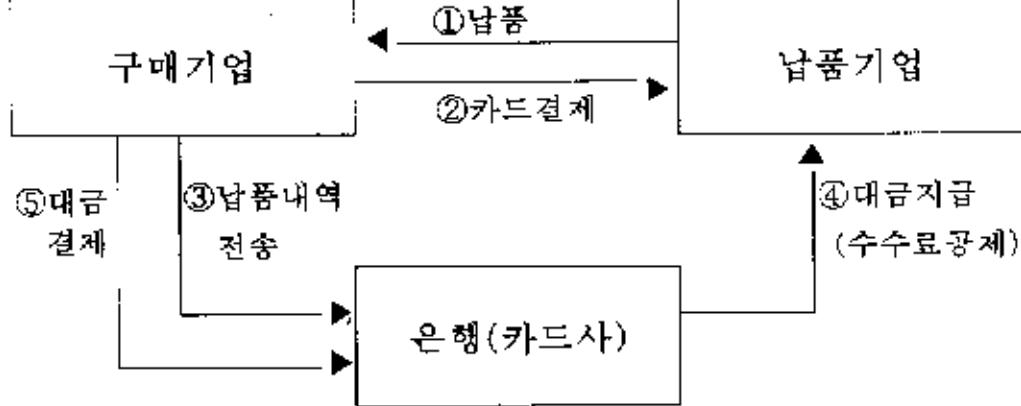
<구매자금융 취급 및 지원방안>



나.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의 활성화

- 구매전용카드는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납품기업은 구매기업의 지급대행 은행(카드사)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결제시스템
 - '99년부터 일부 은행 및 카드사에서 시행중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과정>



- 구매전용카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세정상의 인센티브 부여
 - 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구매자금융제도를 통한 결제시와 동일하게 범인세·소득세 공제
 - 공제세액 : (구매대금 지급을 위한 환어음 결제액 + 구매전용카드 결제액 - 어음발행액) × 0.5%
 - * 공제한도 : 산출세액의 10%
 - 구매전용카드 결제실적이 높은 기업에 대해 구매자금융제도를 통해 결제하는 기업과 동일하게 세정상 우대

-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금결제방식을 개선

- 일시납 및 일부납(Revolving) 방식이외에 신용도에 따라 할부방식이 가능토록 결제방식을 다양화

다. 어음부도에 대한 신용정보 관리 강화

- 어음남발을 억제하고 신용거래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어음부도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

- 현재는 부도시부터 10년경과시에는 부도금 결제여부에 관계없이 신용불량자(적색거래처) 등록을 해제하고 있으나, 부도금액 결제시까지 계속 신용불량자로 관리하고,
- 신용불량자 해제후 기록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현 행 개 정	
○ 적색거래처 등록 및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도금 결제시 등록해제 · 부도금 미결제시 10년간 등록후 해제 	(좌 동) 부도금 결제시까지 계속 등록하여 관리
○ 등록해제후 기록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제후 3년 	· 해제후 5년

* 미국의 경우 신용불량자로 인지되면 모든 금융기관 및 신용조사기관에서 관련정보가 영구히 관리되고, 장기간(통상 7년이상) 모든 금융거래 불가능

- 다만,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부도기업이 다수 발생하였던 특수상황을 감안, 기존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강화된 관리기준에 대한 예외를 인정

라. 어음발행에 대한 금융기관의 Monitoring 강화

- 기업의 어음발행 정보를 축적·집중하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Monitoring 체제를 구축
 - 금융결제원(어음교환소)에 개별기업별 어음교환정보를 누적관리할 수 있는 Database를 구축
 - * 현재는 금융결제원에서 어음교환시 지급은행별 결제금액만 총량관리되고, 개별 발행기업별로는 자료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 각 은행은 기업별 어음교환정보를 참고하여 해당기업에 대한 당좌개설, 어음장 교부등의 판단자료로 활용
-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은행이 어음발행상황을 중점관리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요주의」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정기적(예: 요주의 1개월, 고정이하 1주)으로 어음발행상황을 거래은행에 통보
 - 거래은행은 해당기업의 어음발행 상황을 분석, 이상징후 발견시 어음장 교부 축소·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원천적으로 신용이 취약하거나 부실한 기업의 어음남발을 방지하여 연쇄부도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은행의 당좌개설심사를 강화
 -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당좌개설 심사를 위한 공동 guide line 마련·시행

마. 하도급거래관행의 개선

- '99.4월부터 새로 도입된 하도급대금 결제방식*을 조기 정착시켜 하도급거래의 현금결제를 확대
 - * '99.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의 현금지급을 의무화
 -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만기일을 초과하는 어음교부를 금지
- 공정위 및 중기청의 직권실태조사를 통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
- 이행여부 점검결과를 정부입찰심사에 활용하여 현금 결제비율이 높은 업체를 우대
-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사후관리시에도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기업을 우대
 - 하도급대금의 현금(구매자금용 및 구매전용카드를 통한 결제실적 포함) 결제비중이 일정비율(예 : 6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하도급법상 과징금 제재를 완화

5. 향후 추진계획

- 금일 방안확정후 금년 1/4분기중 관계기관별로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 관련법령 및 규정개정등을 통해 추진
 - 관계기관은 기업의 결제관련 자료*가 공정위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하도급 관행개선과 연계추진되도록 적극 협조
 - * 구매자금용 및 구매전용카드를 통한 결제실적 등
- 재경부는 관계기관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종합점검

> <참고> 어음제도 개선방안 추진사항

추진사항	조치사항	추진기관
◇ 구매자금융제도 도입·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한도대출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공제 ○ 세무조사 대상선정시 우대조치 ○ 신용보증 지원 ○ 정부입찰시 우대조치 ○ 구매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통위규정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세무조사대상선정기준 개정 - 입찰자격심사기준 개정 자체 규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은행 재경부 국세청 신용보증기관 재경부, 조달청 은행연합회, 은행
◇ 기업구매카드 활용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공제 ○ 세무조사 대상선정시 우대조치 ○ 대금결제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세무조사대상선정기준 개정 금감원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경부 국세청 금감위(금감원)
◇ 어음부도에 대한 신용정보 관리강화	금융기관 공동구약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연합회 금융기관
◇ 어음발행 모니터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기업별 어음교환정보 D/B구축 ○ 재무구조 취약기업의 어음발행 정보 분석·관리 ○ 당좌개설심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음교환소규약 개정 당좌거래약관 개정 공동가이드라인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결제원, 은행 은행 은행연합회, 은행
◇ 하도급거래관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하도급결제방식 조기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여부 점검 및 위반업체 제재 - 점검결과의 정부입찰심사 활용 ○ 불공정하도급 행위 사후관리 시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기업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자격심사기준 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위, 중기청 재경부, 조달청 공정위

Q&A 및 참고자료

목 차

Q & A

1. 구매자금융의 구체적인 취급절차 및 기준 /1
2. 상업어음할인방식과 구매자금융방식의 차이 /2
3. 구매기업이 금융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금융을 통해 결제할 유인 /3
4. 구매자금융 및 구매전용카드에 대한 세제지원 사례 /4
5.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구매자금융 또는 구매전용카드 결제시 법인세·소득세를 공제하는 이유 /5
6. 정부물품입찰 적격심사시 구매자금융 이용기업 우대방안 /6
7. 새로 도입된 하도급대금 결제방식의 이행실태 점검방안 /7
8. 불공정 하도급행위 사후관리시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업체 우대방안 등 /8

참고자료

1. 어음의 개념, 유형 및 경제적 기능 /9
2. 외국의 대금결제거래 현황 /11
3. 중소기업의 어음결제 현황 /12
4. 어음부도 동향 /13
5.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 개요 /14
6. 현행 지급이자 손급불산입제도 개요 /15

Q & A

1. 구매자금융의 구체적인 취급절차 및 기준은?

□ 취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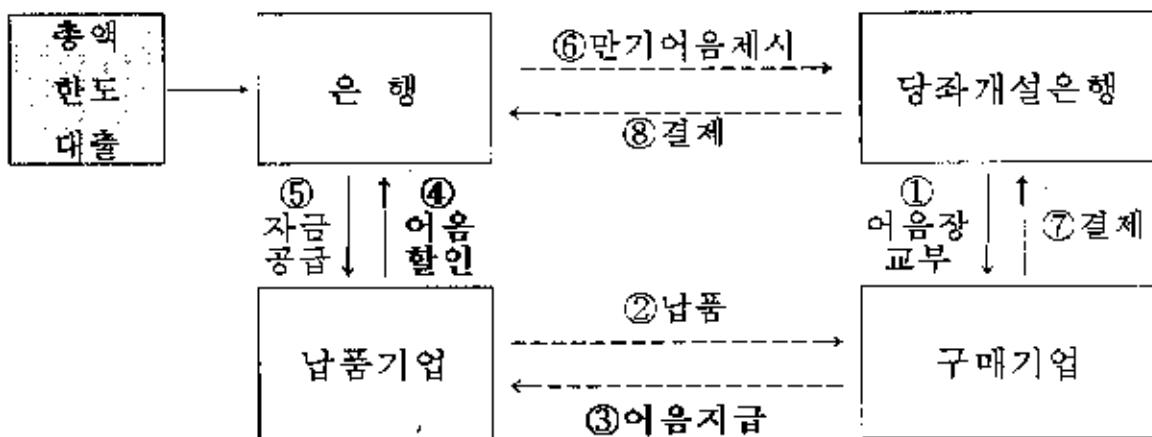
- ① 납품기업은 구매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물품납품
- ② 납품기업은 납품완료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고 납품 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 (세금계산서 첨부)
- ③ 납품기업 거래은행은 구매기업 거래은행 앞으로 환어음 추심
- ④ 구매기업 거래은행은 구매기업에게 환어음 도착 통보
- ⑤ 구매기업이 환어음을 인수함과 동시에 구매기업 거래은행은 사전에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구매자금을 융자한 후 동 자금을 납품기업 거래은행앞으로 송금
- ⑥ 납품기업 거래은행은 납품기업에게 대금지급

□ 취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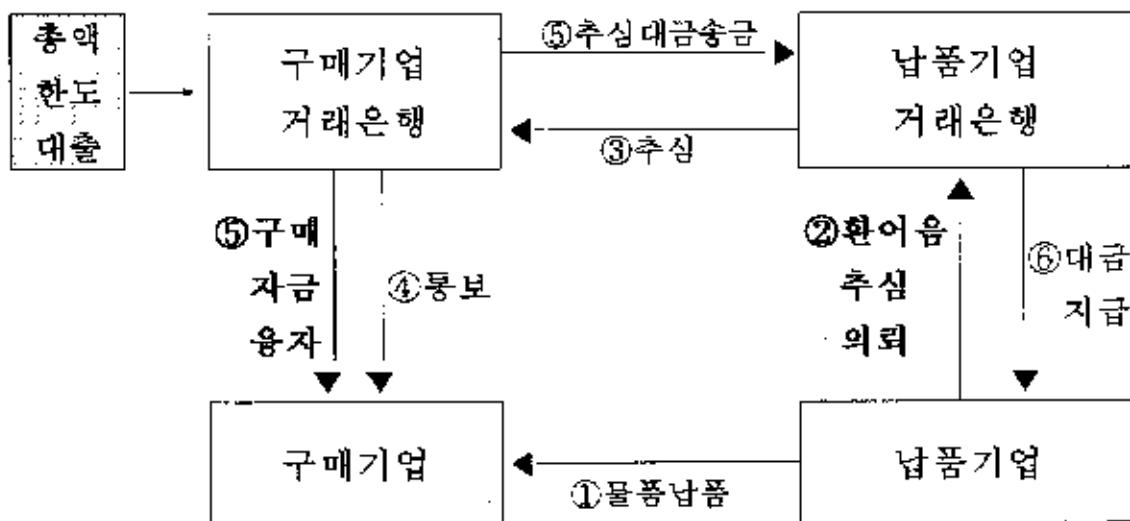
- 용자대상 :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한 기업
- 용자기간 : 구매기업과 거래은행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용자시기 : 구매기업이 인수한 환어음 결제시
- 용자금액 : 구매대금(환어음금액) 범위내
- 환어음형식 : 일람출급(at sight)

2. 상업어음할인방식과 구매자금융방식의 차이는?

- 상업어음할인은 납품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공급자금융방식의 일종
 - 납품기업이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납품기업 거래은행의 어음할인 실적에 따라 한은이 총액한도대출 지원



- 구매자금융방식은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
 - 구매기업이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구매기업 거래은행의 구매자금융 취급실적에 따라 한은이 총액한도대출 지원



3. 구매기업이 금융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금융을 통해 결제할 유인이 있는가?

- 구매기업이 구매자금융을 통해 현금결제시 납품업체는 납품가격 조정을 통해 구매기업의 금융비용을 일부 분담 가능
 - 납품업체는 납품단가가 다소 인하되더라도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어음할인시보다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훨씬 유리
 - * 현금결제시 납품단가를 낮춰 주는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임
- 구매기업은 거래은행이 약정된 한도내에서 구매대금을 자동 결제해 주므로 어음장관리등 어음결제시의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세무조사나 정부입찰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음
 - * 월 5천여장의 어음을 발행하고 3명의 어음업무 전담인력을 운용하는 대기업의 경우 연간 2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으며, 어음관련 금전사고 예방등 계량화가 곤란한 비용절감 효과도 큼
- 특히, 비계열 구매기업의 경우에는 총액한도대출 및 신용보증 지원 등에 따라 구매자금 융자금리를 최대한 낮출 수 있으며
 - 중소기업은 어음결제액을 초과하는 구매자금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게 됨
- 이상의 편익들을 감안할 때 구매자금융을 통해 결제하는 구매 기업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며
 - 구매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함으로써 어음결제가 최대한 축소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

4. 구매자금융 및 구매전용카드에 대한 세제지원 사례

- 중소기업이 물품 등을 구매하고 구매자금융 또는 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연간 구매자금융 또는 구매전용카드 결제액에서 상업어음 발행액을 차감한 금액의 0.5%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연간 구매대금 지급액 120억 원*인 중소기업을 가정
 - * 98년 중소제조업체의 평균 연간 매출액 : 242억 원
98년 제조업의 매출액대비 재료비비중 : 49.4% (자료 : 한은 기업경영분석)
- (사례1)
- 구매자금융 100억 원, 어음매입 20억 원인 경우의 감면세액
 - ⇒ $(100억 - 20억) \times 0.5\% = 4,000\text{만원}$
 - ※ 다만,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의 10%를 한도로 함
- (사례2)
- 구매자금융 60억 원, 구매전용카드 매입 60억 원인 경우의 감면세액
 - ⇒ $(60억 + 60억) \times 0.5\% = 6,000\text{만원}$
 - ※ 다만,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의 10%를 한도로 함
- (사례3)
- 구매자금융 30억 원, 구매전용카드 매입 30억 원, 어음매입 60억 원인 경우의 감면세액
 - ⇒ $(30억 + 30억 - 60억) \times 0.5\% = 0$ (*감면대상 아님)

5.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구매자금융 또는 구매전용카드 결제시
법인세·소득세를 공제하는 이유는?

- 구매자금융이나 구매전용카드 결제는 주로 우량기업(대기업)
위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큼
 - 은행입장에서는 구매자금 대출시의 신용위험(구매자금융),
구매대금 결제의 이행보증(구매카드) 등으로 우량대기업
위주로 보급을 추진할 가능성
 - 대기업 입장에서는 어음결제시보다 관리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되므로 중소기업에 비해 구매자금융이나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할 유인이 큼
 - *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달리 어음업무를 위한 전담부서 및 인력을
운용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어음업무 축소에 따른 관리비용 절감효과가 큼
- 따라서 상대적으로 구매자금융이나 구매전용카드 결제유인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직접 cost를 줄여주는 세제지원을 부여하여
 - 과도한 세수감소를 방지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어음발행을
축소함으로써 어음결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갈 필요

6. 정부물품입찰 적격심사시 구매자금을 이용기업 우대방안은?

□ 정부물품입찰 적격심사제도

- 정부물품 입찰시 이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 대상 : 10억원 이상의 물품입찰
 - 심사기준 : 이행실적(25점), 기술능력(20점), 재무상태(25점), 신인도(±10점), 입찰가격(30점)의 평가결과 85점 이상 획득

□ 구매자금을 이용기업 우대방안

< 신인도 부문 >

현 행	우대방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1년간 구매대금 지급을 위한 환어음 결제액이 어음발행액보다 큰 경우* 가점부여 : 3점 범위내 <p>*어음발행액의 3배 이상일 경우 3점 " 2배 " 2점 " 1배 " 1점</p>

7. 새로 도입된 하도급대금 결제방식의 이행실태·점검방안은 ?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조사방식*을 도입, 대규모 직권실태조사를 실시 ('99년중 3천여개 업체)
 - * 원사업자가 작성한 조사표를 수급사업자를 통해 cross-checking하고, 위반혐의 발견시 현장조사 실시 또는 소명기회 부여
- 금년 서면실태조사시부터는 현금결제비율 유지, 어음 만기일 제한등 새로 도입된 하도급대금 결제방식을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
- 금년중 2만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과징금등 불이익조치를 부과

8. 정부공사입찰 적격심사시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위반 업체 제재 및 불공정 하도급행위 사후관리시 현금결제 비율이 높은 업체 우대방안은 ?

- 정부공사 입찰자격 사전심사제도 (Pre-Qualification)
 - 입찰실시전에 미리 참가자격을 심사하여 일정점수를 총족하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토록 하는 제도
 - 대상 공사 : 100억원 이상 교량·댐등 22개 공종
 - 심사기준 : 시공경험(30점), 기술능력(35점), 경영상태(35점), 신인도(± 10 점)의 평가결과 60점 이상 획득
 - * PQ점수는 최종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시에 반영되므로 실제로 낙찰자 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위반업체 제재방안

현 행	제재방안
<p><신인도 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1년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과징금부과를 받은 자 : -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1년간 <u>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u> 위반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로 과징금부과를 받은 자 : - 5점

- 한편,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업체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감점하여 과징금 부과, 정부입찰 제한등 불이익 조치를 면제하거나 과징금 부과금액을 경감하는 등 우대

※ 공정거래위원회의 벌점관리 내용

- 과거 3년간 벌점누계가 4점이상인 업체 : 과징금 부과
- 과거 3년간 벌점누계가 15점이상인 업체 :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 과거 3년간 벌점누계가 20점이상인 업체 : 영업정지요청

참고자료

1. 어음의 개념, 유형 및 경제적 기능

- 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약속어음)하거나 발행인이 일정금액을 소지인에게 지급할 것을 지급인에게 위탁(환어음)하는 일종의 유가증권
- 법적 형태에 따라 약속어음과 환어음으로 구분
 - 약속어음 :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지급약속증권(2당사자관계)
 - 약속어음은 상거래가 원인이 되어 발행된 상업어음(진성어음)과 상거래와 관계없이 자금융통을 위해 발행되는 융통어음으로 구분
 - ※기업어음(CP)은 종금사등이 선정한 적격업체가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종금사등이 매입하여 일반에게 매출하거나 증개)
 - 환어음 :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일정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지급위탁증권(3당사자관계)
- 발행인의 제한여하에 따라 은행도어음과 문방구어음으로 구분
 - 은행도어음 : 당좌계약을 통해 은행이 지급지인 어음
 - 어음교환을 통한 은행의 대금회수 대행 및 부도시의 엄격한 제재에 따른 공신력 등으로 널리 활용
 - 문방구(개인)어음 : 은행과 관련없이 사인간에 수수한 어음

- 어음의 본질적 기능은 신용기능이나, 지급·송금·회수기능도 수행
- 신용기능 : 어음의 만기시까지 대금지급 유예
 - 지급기능 : 소지인이 만기에 어음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거래 대금결제 종료
 - 송금기능 : 환어음은 국제거래의 송금수단으로 주로 이용
 - 회수기능 : 금융기관 할인 등을 통해 대금 조기회수 가능

※어음과 수표의 차이

- 어음의 1차적 기능은 신용기능이나, 수표의 본질적 기능은 지급기능

	약속어음	수표
○ 만기일	- 확정일 출금, 발행일후 정기출금등 신용기간 기재가 일반적	- 항상 일람출금
○ 지급제시 기간	- 만기일후 2거래일 이내	- 발행후 10일이내
	- 제한없음	- 은행과 당좌예금계약
○ 발행인	· 은행도어음의 경우 은행과 당좌 예금계약을 맺은 자	을 맺은 자
○ 지급인	- 제한없음 (발행인이 지급인) · 은행도어음의 경우 은행이 지급자	- 은행에 한정
○ 주채무자	- 발행인	- 없음

2. 외국의 대금결제거래 현황

□ 미국 : 일정 외상기간 경과 후 수표발행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

- 외상매출채권의 조기현금화를 위해서는 주로 채권양도방식에 의한 팩토링(factoring)을 활용

□ 유럽 : 수표·어음·송금방식 등 국가별로 차이

- 영국 : 주로 당좌수표를 활용하고, 상호거래구좌(account) 개설에 의한 신용거래방식도 활용

- 프랑스 : 어음보험제도가 발달되어 기업간 거래의 80% 이상을 어음결제로 처리

- * 결제비중 : 어음 약 80%, 수표 약 20% (현금결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음)

- 독일 : 20세기 중반까지 어음결제 위주였으나, 이후 어음결제가 축소되고(10% 수준) 송금방식을 주로 활용

□ 일본 : 현금·어음·외상매출 등 우리나라 유사한 방식

- 어음결제 비중 및 어음대금의 회수기간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

- * 일본의 어음결제 현황

- 어음결제 비중('97) : 40% (한국 : '98년 54%)

- 120일 초과 장기어음 비중('97) : 12% (한국 : '98년 39%)

□ 동남아 국가 : 우리 어음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지급기일 약정수표(선일자 수표)를 사용

3. 중소기업의 어음결제 현황

□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결제방법

	'95	'96	'97	'98	'99.1/4	'99.2/4	'99.3/4
어 음	57.5	55.7	59.5	53.6	50.7	46.9	47.3
현 금	30.3	29.4	28.2	32.0	37.1	39.2	39.3
외 상	12.2	14.9	12.3	14.4	12.2	13.9	13.4

□ 중소기업의 어음대금 결제(회수)기일

	'95	'96	'97	'98	'99.1/4	'99.2/4	'99.3/4
수취기일	32	37	43	54	49	43	43
결제기일	96	98	107	103	100	94	92
총회수기일	128	136	150	157	149	137	135

□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시 판매대금 결제방법

	'96	'97	'98	'99.1/4	'99.2/4	'99.3/4
어 음	72.4	74.9	77.5	71.1	69.6	70.5
현 금	23.9	22.6	15.5	22.7	23.1	22.9
외 상	3.8	2.6	7.1	6.2	7.3	6.6

□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시 어음대금 결제(회수)기일

	'96	'97	'98	'99.1/4	'99.2/4	'99.3/4
수취기일	41	41	43	41	37	36
결제기일	77	91	89	80	75	76
총회수기일	117	132	109	121	112	112

*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실태조사

4. 어음부도 동향

□ 어음부도율 추이

(금액기준, %, %p)

	97년		98년		99년								
	12월	12월			1/4	2/4	3/4	4/4	10월	11월 (A)	12월 (B)	B-A	
전국	0.40	1.49	0.38	0.12	0.33 <0.10>	0.11	0.12	0.70 <0.08>	0.35 <0.10>	0.57 <0.10>	0.39 <0.11>	0.14 <0.08>	△0.25
서울	0.36	1.58	0.30	0.10	0.34 <0.09>	0.09	0.11	0.75 <0.07>	0.38 <0.08>	0.62 <0.09>	0.42 <0.10>	0.14 <0.07>	△0.28
지방	0.64	1.00	0.90	0.33	0.22	0.31	0.21	0.17	0.18	0.19	0.20	0.15	△0.05

1) < >내는 매우 계열사 및 관계사 제외시 부도율

□ 부도업체수 추이

(개)

	97년		98년		99년								
	12월	12월			1/4	2/4	3/4	4/4	10월	11월 (A)	12월 (B)	B-A	
전국	17,122 <62>	3,197 <279>	22,855 <66>	832 <32>	6,718 <25>	1,932 <58>	1,662 <25>	1,477 <97>	1,647 <14>	565 <17>	475 <13>	607 <23>	132 <60>
서울	6,656	1,218	8,108	336	2,519	721	651	549	638	211	186	242	57
지방	10,482	1,979	14,720	527	4,159	1,211	1,011	926	1,008	354	290	365	75

1) < >내는 월평균

□ 신설법인 및 부도법인수 추이(7대도시)

(개)

	97년		98년		99년								
	12월	12월			1/4	2/4	3/4	4/4	10월	11월 (A)	12월 (B)	B-A	
신설법인수(A)	21,057	1,459	19,277	2,079	29,976	6,658	7,161	7,577	8,450	2,722	2,629	3,099	472
부도법인수(B)	6,132	1,175	7,538	300	2,429	662	596	524	647	212	190	245	55
A/B(배)	3.4	1.2	2.6	6.9	12.3	10.1	12.0	14.7	13.1	12.8	13.8	12.6	1.2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5.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제도 개요

□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 할인, 무역금융 및 소재 부품생산자금등의 지원실적에 따라 한국은행의 저리자금 지원

○ 지원한도 : 7조 6천억원

- 은행별 한도 :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생산 자금 3개부문에 대하여 총 5.6조

- 한은 지점별 한도 : 지방중소기업자금 2.0조

○ 지원금리 : 연 3%

○ 배정방식

- 각 은행의 대상자금 지원실적에 비례하여 지원한도를 배분하되 신규대출, 벤처기업 지원실적등은 우대

6. 현행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개요

□ 다음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①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 ②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 ③ 자기자본의 5배(여신전문금융회사·위탁회사는 15배)를 초과하여 차입한 상장법인·대규모기업집단의 지급이자
- ④ 건설중인 사업용 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⑤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 서비스업 1배, 여신전문금융회사 15배)를 초과하여 차입한 법인이 보유한 타법인 주식·출자지분에 관련한 지급이자
- ⑥ 위 차입금 과다법인이 보유한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 등에 관련한 지급이자 (99.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까지만 적용)
- ⑦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취득·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 ⑧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관련한 지급이자

□ 손금불산입액 계산

- 해당항목에 대한 지급이자를 직접 부인 : ①, ②, ④
(손금불산입액 = 해당 지급이자)
- 지급이자중 해당항목에 상당하는 금액을 안분하여 손금불산입 : ③, ⑤, ⑥, ⑦, ⑧

* 예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 초과시 손금불산입액
= 지급이자 × (총차입금 - 자기자본의 5배)/총차입금